

국방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 변화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선방안 연구

손좌근
국방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 according to the change in defen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wa-Geun So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요 약 국방연구개발이란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과거 국방연구개발 수행시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하였다. 보다 자세히는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사업법 제31조의2, 즉 비영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 제정, 시행되어 국방연구개발의 사업 구분에 따라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가 변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국방연구개발의 정의 및 구분에 대하여 과거 「방위사업법」과 비교해보고, 국방연구개발 시 획득한 개발성과물 중 특히 지식재산권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전후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유하고, 이러한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방연구개발 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refers to 'one of the methods of acquiring weapons systems; it is a method of technology that we do not possess, either alone or in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producing and acquiring the necessary weapons systems by putting the researched technologies into practical use'. In the pa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quired by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were owned in accordance with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the 「ENFORCE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On the other hand, with the recent enactment of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nged according to the subject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study compared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changes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 with the previou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 study of the change in defen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llowing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 was conducted.

Keyword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fen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fense Development,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Corresponding Author : Jwa-Geun Son(ADD.)

email: nature_son@naver.com

Received July 8, 2021

Accepted August 5, 2021

Revised July 29, 2021

Published August 31, 2021

1. 서론

국방연구개발이란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과거 국방연구개발 수행시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하였다. 보다 자세히는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사업법 제31조의2, 즉 비영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 제정, 시행되어 국방연구개발의 사업 구분에 따라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가 변화하였다. 촉진법에서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고,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유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나,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단독소유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연구개발에서 획득한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 공동소유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동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정부 산하 연구개발기관 또는 정부에서 공동소유 기관이 아닌 자에게 실시 및 사용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 영리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업/과제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기관에서도 소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방연구개발 수행 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 변화를 연구하고, 보다 자세히는 촉진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국방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2.1 국방연구개발 정의 및 구분

앞서 설명했듯 국방연구개발이란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과거 국방연구개발 사업은 목적에 따라 ‘무기체계 R&D 사업’과 ‘국방기술 R&D 사업’으로 구분되고, 국방

기술 R&D 사업은 ① 기초연구, ② 핵심기술개발, ③ 신개념기술시범(ACITD), ④ 민·군겸용기술, ⑤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기초연구, 핵심기술개발, 전용기술 등이며, 기초연구와 핵심기술개발은 산학연도 주관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현재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구분은 「촉진법」 제2조(정의) 제5호의 각 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Table 1.와 같다.

Table 1.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 (Article 2)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나.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라. 그 밖의 신기술 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

① 여기서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호에는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방위사업법」 제3조 제3호에는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② 「촉진법」 제2조 제5호의 나 “핵심기술”이란 ‘무기체계 또는 비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 첨단기술 및 이러한 기술들이 집약되어 생산되는 중요부품을 말한다.’ ③ 「촉진법」 제2조 제5호의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이란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④ 「촉진법」 제2조 제5호의 라 “그 밖의 신기술”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을 말하고, ⑤ 「촉진법」 제2조 제5호의 마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이외의 군수품을 말하며, “전력지원체계”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무형적인 개발성과물의 획득하는 개념과는 다른 국방연구개발이므로,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2.2 지식재산의 정의

한편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지식재산

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기본법」 제3호에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분류되는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권 및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인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2.3 방위사업법 상 지식재산권 귀속

과거 「방위사업법」 제31조의2(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등) 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연구개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성과물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계약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비영리기관(학교, 정출연, 비영리법인 등)과 계약 등에 따라 공동소유로 할 수 있었다.

Table 2.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rticle 31-2)

「방위사업법」 제31조의2(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등) (2021.4.1. 삭제) ① … 그 연구개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Table 2.의 규정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단독소유하거나 국방과학연구소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소유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내용에 근거

하여 귀속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위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의 각 호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소유 할 수 없음은 당연하였다.

2.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상 지식재산권 귀속

최근 「촉진법」이 제정 및 시행(‘21.4.1.) 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의 정의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소유권 관계도 변화하였다. 기존 국방연구개발 수행 시 지식재산권 소유의 근거가 되었던 「방위사업법」의 관련 조항은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삭제되었고, 이후 국방연구개발에서 산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하게 되었다.

국가인 방위사업청에서 계약 또는 협약으로 진행하는 연구개발의 경우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는 ‘①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구개발참여기관에 지식재산권 소유에 관하여서도,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항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과 공동소유 하는 절차는 2가지로 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제1항 제1호에 ‘법 제2조 제5호 가목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또는 마목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수행 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계약 또는 협약에 명시된 비율로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제1항 제2호에 ‘법 제2조 제5호 나목인 핵심기술 연구개발, 다목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라목인 그 밖의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인 경우에 방위사업청과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을 수행 중 언제라도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권 리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번째의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수행 중에는 국가인 방위사업청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일정 기한 안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도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동소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양도대금을 지급

하고 지분 일부를 이전받는 형태로 공동소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부인 방위사업청이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단독소유 하거나,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공동소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성과물을 공동소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물을 실시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공동소유권자에게 일정한 기술료를 납부하고 해당 권리를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정한 경우에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국가를 위해 개발성과물을 사용 또는 실시하여 무기를 양산하는 방산업체에서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결국 무기의 단가 상승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계약을 통하여 공동소유 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해당 사업/과제가 종료 된 후 일정 기간내에 양도계약 신청을 함으로써 공동소유 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양도계약 신청 시에는 해당 사업/과제에서 획득한 개발성과물 전부를 양도계약 신청해야되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당 사업/과제에서 획득한 개발성과물 중 일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기여한 것일 것이고, 일부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기여한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사업/과제에서 획득한 개발성과물 전체를 양도계약 하여 공동소유 하는 것은 발명에 기여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발명진흥법 및 특허법의 취지와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제3장 개선방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하여서는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계약 또는 협약 체결(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연' 할 수 있다(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 출연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항에 적혀 있듯,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에서 출연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

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의 소유는 「촉진법」의 틀을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관으로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개발성과물의 소유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산업재산권)에 따라 소유하게 되었을 뿐 기존 「방위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에 규정되었던 각호의 기관과도 공동소유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결국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구분하고 있는 사업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① 가목의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경우, ② 나목의 핵심기술연구개발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경우, ③ 라목의 그 밖에 신기술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경우에 개발성과물의 소유 근거는 「촉진법」에 따르는 것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게 된다.

2.5 지식재산권 소유관계 분석 결과

앞서 설명했듯, 「촉진법」 제정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구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었고, 각 구분에 주관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산학연 주관에 따라 개발성과물의 귀속 근거를 살펴 보았다. 그 동안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방산 및 민간 연구기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요청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5년 3월 방위사업법 제31조의2가 신설되어 비영리기관과 공동소유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 나아가 2021년 4월 시행된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비영리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일정한 요건하에 연구개발참여기관과도 공동소유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다만, 촉진법 제정 단계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촉진법의 틀에서 벗어나 「국방과학연구소법」을 따르게 되었고, 이는 국방 지식재산권의 소유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보다 자세한 소유관계 변화는 Table 3.과 같다

결국, 향후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산학연 주관인 경우 국가가 단독소유 하거나, 국가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소유하거나, 국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유 하는 형태로 수행될 것으로 보이고,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인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단독소유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3. change in Defen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2	subject	As is	To be
weapons systems	ADD	owned(Gov or ADD) or joint ownership	owned(ADD)
	Industry-AcademiaResearch	(Gov or ADD or non-profit legal entities)	owned(Gov) or joint ownership (Gov or profit legal entities)
core technologies	ADD	owned(Gov or ADD) or joint ownership	owned(ADD)
	Industry-AcademiaResearch	(Gov or ADD or non-profit legal entities)	owned(Gov) or joint ownership (Gov or profit legal entities)
future challenges	ADD	-	owned(ADD)
	Industry-AcademiaResearch		owned(Gov) or joint ownership (Gov or profit legal entities)
new technologies	ADD	-	owned(ADD)
	Industry-AcademiaResearch		owned(Gov) or joint ownership (Gov or profit legal entities)

3. 향후 개선 방안

첫 번째로 「촉진법」 제10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는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가 어떠한 범위까지 국가 안보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국가안보라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도까지 적용한다면 공동소유권자의 권리를 과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결국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국가 안보라는 공익’과 ‘특허권자 보호라는 사익’의 균형이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를 국가가 최종 사용자가 되는 국방연구개발에서 실시한다거나, 양산 적용 등 국가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의 경쟁업체가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우선시하여 적용될 수 있게 되어야 실무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술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핵심기술, 그 밖의 신기술 등에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조항의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1호에서 5호 중 4호에서는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기술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에 무기체계 생산까지 갈 것 인지 여부는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술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와 공동 소유권자에게 일정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국가의 출연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학연 주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결국 국가인 방위사업청과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 받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 또는 공동소유 기관에 기술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 계약 또는 협약으로 추진하는 산학연 주관 국방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방연구개발사업도 국가인 방위사업청이 단독 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6호를 Table 4.와 같이 신설하여 실무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Table 4. Enforce Decree of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Policy Act (Article 1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⑤ ...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4.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6.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인 경우

세 번째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핵심기술, 미래도전, 그 밖의 신기술 등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양도계약을 통하여 공동소유 할 수 있을 것이나, 「지식재산권 관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715호) 제4조의3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진행 중에 창출된 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단독소유 하고 있고, 사업 종료 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에 일정한 기한 내에 양도계약 신청 후 공동소유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동소유 가능한 절차로 진

행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국방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선택하여 양도계약하는 것이 아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전체의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발명한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소유하거나, 반대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발명한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able 5. 와 같이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 제4조의3 제1항의 단서 조항으로써 “다만, 양도계약 대상 지식재산권은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또는 창작)만이 가능하다.”라는 단서조항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한 기관만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해당 양도 대상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공동소유 기관 검토를 발명자 기준으로 판단하여, 발명자의 소속기관 여부를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더 앞서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발명자의 발명 기여도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Table 5. management guidelin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4-3)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 시행령 제4조3
①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위해 방위사업청장(기술정책과)에게 지식재산권 양도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양도계약 대상 지식재산권은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또는 창작)만이 가능하다.**

네 번째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범위인 ‘지식재산권’으로 Table 6. 과 같이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하겠다.

Table 6. Act on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rticle 4-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지식재산권**)
연구소가 발명(또는 **창작**)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국방연구개발의 정의 및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방연구개발에서 획득한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아본 개선방안을 적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방위사업법」에서 근거하고 있었으나, 「촉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고, 국방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촉진법」에 따라 개발성과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국방연구개발의 구분에 따라 ‘무기체계’, ‘핵심기술’, ‘미래도전’, ‘그 밖의 신기술’로 구분하였고, 각 구분 별 주관기관에 따라 개발성과물을 소유하는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인 경우 「촉진법」 제10조의 계약 또는 협약이 아닌 출연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촉진법」의 틀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귀속 할 것이다. 산학연이 주관인 경우에는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인 방위사업청이 원칙적으로 소유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소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방연구개발의 결과물로 산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 근거가 된 「촉진법」은 첫 번째로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방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향후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가와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또한 부여할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부여는 각 공유자의 동의하에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외에도 국방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설정 후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소유권자는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나,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나 산학연의 경우에 방위사업청에서 출연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사용자를 국가로 보고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양도계약을 통한 공동소유

절차에 있어서, 사업 종료 후 양도계약 신청을 통하여 공동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의 소속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동소유 검토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연구개발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주관기관과 공동소유 하는 것은 방산관련 기관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기관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국방 분야 발명은 일반적인 발명과는 다른 국가방위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 또한 이익 창출의 목적이 아닌 군수품에 대한 원가 절감 및 효율적인 무기체계 적용 등 방어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방분야 발명은 대부분 사용자가 군으로 한정되며, 공동소유로 등록받은 특허권의 권리 행사로 인하여 군수품의 생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국방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촉진법이 시행('21.4.1.) 후 얼마되지 않아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과 개발성과물의 공동소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향후 많은 공동소유 사례들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손 좌 근(Jwa-Geun Son)

[정회원]



- 2020년 2월 : 충남대학교 특허법 무대학원 특허법무학과 (법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국방과학연구소 관리원

〈관심분야〉

국방과학, 지식재산권

References

- [1] L. S. Jo, A study of Defense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18, Korea
- [2] H. G. Ryu, Issue and improvements in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lawmaking and policy, 11, 2, 209-244, 2019
- [3]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fense Acquisition Act, Enforcement Decree of Defense Acquisition act」, 2021
- [4]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Act」, 2021
- [5]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ct o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2015
- [6]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Act」, 2021